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2025. 12. 26.

KEF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

목 차

I. 심의사항

1. 협회 정관 개정안 ····· 3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 5
3.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안 ····· 11
4. 공인승마대회 규정 개정안 ····· 14
5. 2026년도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 ···· 15
6. 마장마술 1Star 자격 부여 및 3Star 자격 승급안 · 17
7. 마장마술 심사지 개정안 ····· 20
8. 말복지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사업 운영 계획(안) ··· 21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1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1 협회 정관 개정안

□ 의결주문

○ 협회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도 제7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5. 12. 22.)에서 『협회 정관 개정안』 원안 동의

○ 2025년도 제9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25. 11. 26.)에서 『회원종목단체 규정』 개정 원안 승인

□ 주요내용

○ (제6조) 회원종목단체 대회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 의무 명시

○ (제25조) 감사 임기 명확화

○ (제47조의2) 비위 등 사회적 물의 발생 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사전·사후 지도·감독 근거 마련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④ "생략" <신 설>	**제6조(회원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원종목단체가 소관범위 내 대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 조 명칭 변경 • 안전관리 조치 의무 명시

현행	개정안	비 고
	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00. 00.> [제목개정 2026. 00. 00]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감사 외의~~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5. 25., 2023. 3. 29., 2025 3. 13.> 1~2 "생략" <신 설> ③~⑤ "생략"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임원의 기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 5. 25., 2023. 3. 29., 2025 3. 13., 2026. 00. 00.> 1~2 "현행과 같음" 3. 감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 감사의 임기 명확화(부칙을 본문에 명시)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⑥ "생략"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⑨ "생략"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주무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조직 운영 및 사무처 업무 전반(또는 일부)에 대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00. 00.> 1.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2. 신규 회원종목단체 지원 3. 회원종목단체가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⑧~⑨ "현행과 같음."	• 관리·감독 권한 명문화
<신 설>	**부칙(2026. 00. 00.)**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심의결과: 협회 정관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1-1]: 협회 정관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2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2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 의결주문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도 제7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5. 12. 22.)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동의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2025. 10. 1.) 반영

○ 지난 '25.7.21.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미성년자 선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징계시효 연장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 예외 인정
- 징계기준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격리, 피해자 심리적 안정 조치

○ 폭력사건에 대한 규정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씨름, 유도 등 여러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엄중함
- ('25.8.11. 뉴스1) 씨름부 감독이 삽으로 중학생 내리쳐...폭력 시달리다 극단 시도
- ('25.9.2. 중앙일보) "온몸 피멍"13살 꿈 접게 한 유도코치

○ 철인3종 성폭력 의혹 관련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듣지 않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기사화
- ('25.8.26. 한겨레) 철인3종 청소년대표 남자 선수 성폭력 의혹...협회, 은폐·축소 의혹

[기사 일부발췌] 사건을 인지한 협회가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에 사건을 '합의된 성관계'라고 보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증언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 **심문과 진술권(제30조) 관련** 폭력·성폭력 등 권익 침해 사안 발생 시 조사과정에서 징계의결 요구자 및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강화

○ **대회 전, 훈련 중 폭력·성폭력 행위 처리절차(제35조의2) 관련** 가해 혐의자로 신고 접수 시, 징계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 필요

□ 주요내용

○ **(제30조제4항 신설)** 권익침해 사안과 관련된 징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 의무 보장 및 대리인을 통한 의견개진 명문화

○ **(제35조의2 신설)** 대회 전 훈련 중 (성)폭력 행위 신고 접수 즉시 동 훈련 및 대회 출전 금지 조항 신설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생략"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위원회가 징계한다.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위원회가 관할하되, 별표 1의 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임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사건은 대한체육회 위원회가 관할한다. 다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위원회가 관할한다. <개정 2025.12.26.>	▪ 피해자 진술권 강화

현행	개정(안)	비고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⑤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관할한다. <개정 2025.12.26.>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⑥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8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개정 2023. 1. 27.> 1.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⑥ 경기인 등록 규정 제2조제11호의 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부 징계사건은 회원시·도체육회에서 관할을 정하여 처리하되, 관할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사건을 직접 관할한다. <개정 2023. 1. 27., 2025.12.26.> 1.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국가대표 선수(후보선수 포함) 및 지도자의 경우 국가대표 지위와 관련한 비위 사건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심문과 진술권)	**제30조(심문과 진술권)**	

현행	개정(안)	비고
①~④ “생략”	①~④ (현행과 같음)	▪ 피해자 진술권 강화
<신설>	⑤ 위원회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구술 또는 서면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진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6.>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대회 중 경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자구 수정
<신설>	**제35조의2(훈련 및 대회 중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회 참여 허용 절차)** ① 체육회 및 관계단체가 훈련 및 대회 중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경우,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신고 접수 시점부터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훈련 및 대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체육회 및 관계단체는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해당 단체는 신고접수 직후 즉시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개최를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 및 해외전지훈련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 단체장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대회 전, 훈련 중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④ 소위원회의 조치는 해당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의 계속 유지나 해제와 같은 임시 조치에 한한다. ⑤ 다만, 대회 48시간 전부터 대회기간까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제3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정에 따라 참여 금지 여부는 결정된다. 이후 최종 혐의가 인정되어 관련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개인의 경기 결과는 자동으로 실효되고, 메달과 점수, 상금의 몰수 등의 결과 조치가 부과되며, 경기대회 주관단체는 해당 경기대회의 단체종목에 대해 상기 결과조치보다 더 엄격하게 부과하는 대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여금지가 유지될 경우,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훈련 및 대회 참여 금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재심의 절차는 제34조에 명시된 재심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제3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절차 중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⑦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징계혐의자 및 피해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해당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신설>	**부 칙(2025. 12. 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 시행일 명시

현행	개정(안)	비고
	부터 시행한다.	

□ **심의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2-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3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3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안

□ 의결주문

○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도 제7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5. 12. 22.)에서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안』 원안 동의

○ 2025년도 제9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11. 11.)에서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안' 원안 동의

○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의결

○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각종 체육계 폭력사건 관련 경기인 등록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인 결격 추가 보완 필요

○ '21.11.1.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제출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서약서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 지적

○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어 반복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한조치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학생선수에 대한 등록 제한 명시 필요

* 학교폭력 학생선수의 경우, 징계 정보를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본 심의사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조항 등 주무부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법안 발의 예정

○ **(제14조제2항 개정)** 선수대상 폭행 사건 관련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사람 외에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결격사유 강화 필요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1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3. "생략" <신설>	**제11조(등록 결격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 적용 <신설 2025. 12. 26.>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 다.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 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 마. 사회봉사 : 8개월 바. 출석정지 : 10개월 사. 학급교체 : 10개월 아. 전학 : 12개월 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 2025. 12. 26.> 6. "현행 제5호와 같음" <개정 2025. 12. 26.> 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 2025. 12. 26.> 8. "현행 제7호와 같음" <개정 2025. 12. 26.>	▪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 고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10. “생략”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0. “생략”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26.>	▪ 제한조치 추가
<신설>	**부 칙 (2025. 12. 26.)**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 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심의결과: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3-1]: 경기인 등록 규정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4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4 공인승마대회 규정 개정안

□ 의결주문

○ 공인승마대회 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도 제7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5. 12. 22.)에서 『공인승마대회 규정 개정안』 원안 동의

○ 2025년도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12. 15.)에서 ‘공인승마대회 규정 개정안’ 원안 동의

□ 주요내용

○ 종합마술 출전 자격 완화
(기존) 장애물 120Class 및 마장마술 B Class 기준 모두 충족→
(변경안) 장애물 120Class 기준 충족

○ 장애물 경기에 한하여 번외경기 인정

○ 복합마술 종목 삭제에 따른 해당 종목 출전신청비 삭제

○ 심판위원회에서 마장마술 F Class 심사지 변경에 따른 종목 변경

현행		변경	
F Class	마장마술 2	F Class	F1 Class
	USEF Training Level Test 2		F2 Class
			USEF Training Level Test 2

○ 기타 자구수정

□ 심의결과: 공인승마대회 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4-1]: 공인승마대회 규정 규정 전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5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5 2026년도 국가대표 · 상비군 · 청소년 · 유소년 선수 선발

□ 의결주문

○ 2026년도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을 심의 · 주문함

□ 제안사유

○ 2026년도 제10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12. 15.)에서 '2026년도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 원안 동의

○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 정원

구 분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계	비 고
국가대표	4명	4명	4명	12명	대한체육회 승인
국가대표 상비군	4명	4명	4명	12명	본 협회 자체 선발
청소년 대표	4명	4명	-	8명	
유소년 대표	4명	4명	-	8명	
계	16명	16명	8명	40명	

□ 주요내용

○ 2025년 개최된 국제대회 및 협회가 지정한 전국대회에서 각 종목별 통합순위에 따라 대표선수 선발

○ 2025년도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유소년 선수 선발대회 현황

구 분			춘계	대통령	추계	회장배	계
마장마술	S-3 Class	국대,상비군		1		1	2
	S-2 Class	국대,상비군	1		1		2
	S-1 Class	국대,상비군	1	1	1	1	4
	A Class	청소년	1	1	1	1	4
	B Class	청소년	1	1	1	1	4
	D Class	유소년	1	1	1	1	4
장애물	150 Class	국대,상비군		1		1	2
	145 Class	국대,상비군	1		1		2
	140 Class	국대,상비군	1	1	1	1	4
	130 Class	청소년	1	1	1	1	4
	120 Class	청소년	1	1	1	1	4
	90 Class	유소년	1	1	1	1	4
	80 Class	유소년	1	1	1	1	4
종합마술	S-1 Class	국대,상비군			1	1	2

○ 국제대회 성적 제출 선수 : 권준성, 정철희, 허준성

○ 대표선수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선수로 변경

○ 국가대표 선수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 선발 이후 변경

□ 심의결과

구 분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마술	계
국가대표	남동헌 김태건 김치수 김 혁	이기주 이건주 권재현 권준성	방시레 이동화 류시원 박홍수	12명
국가대표 상비군	최삼중 최경민 김시우 황영식	이현규 이요셉 채미소 박수일	박정현 김선하 권대운	11명
청소년 대표	최준우 박서영 이현서	박사랑 나현서 전은유 우진혁		7명
유소년 대표	나원제 임도은 양미소 황 민	김다나 황재인 류승민 김푸른		8명
계	15명	16명	7명	38명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6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6 마장마술 1Star 자격 부여 및 3Star 자격 승급안

□ 의결주문

○ 마장마술 1 star 자격 부여 및 3 star 자격 승급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 사유

○ 2025년도 제4차 심판위원회(2025. 12. 10.)에서 '마장마술 1 star 자격 부여 및 3 star 자격 승급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

○ 마장마술 종목의 심각한 심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선수 출신(S-1 Class 이상 입상자)에게 신규 자격 취득의 기회 제공

○ 마장마술 S-4 Class(GrandPrix) 참여 가능 심판의 인력풀 확보를 위하여 승급 조건을 충족한 인원의 자격 승급 진행

○ 2025년도 마장마술 공인심판 자격 유지/승급 및 취득 강습회 수료 이후 마장마술 S-1 Class 입상자 및 마장마술 공인 심판 1 star, 2 star를 대상으로 평가 시험을 진행하였고, 신규 취득의 경우 평가점수 80점 이상, 자격 승급의 경우 평가점수 60점 이상 획득자에게 자격 부여 및 승급을 진행

□ 주요 내용

○ 2025년도 마장마술 공인심판 자격유지/승급 및 취득 강습회 시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제6조(심판 자격 취득 요건) 제5항에 따라 마장마술 S-1 Class 입상자에 한하여 신규 자격 취득 대상자(19명)의 평가 시험을 실시하였고,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자격 부여

○ 2025년도 마장마술 공인심판 자격유지/승급 및 취득 강습회 시 공인심판 관리 시행세칙 제7조(심판 자격 유지 및 승급 절차) 제1항에 따라 마장마술 공인 심판 자격 승급 대상자(8명)의 평가 시험을 실시하였고,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자격 승급 진행

○ 마장마술 심판 자격 부여 현황(1 Star 17명, 3 Star 5명)

□ 자격 부여

(가나다 순)

번호	성 명	소 속	심판 등급	비고
1	견*미	㈜화성홀스파크	1 star	
2	곽*지	모비이콰인		
3	권*주	-		
4	김*섭	인천광역시승마협회		
5	김*석	제주한라대학교		
6	김*석	모나미승마단		
7	김*수	김치수아카데미		
8	박*현	굿라이더		
9	박*원	팀에이스		
10	오*훈	모나미승마단		
11	이*진	팀에스제이		
12	조*인	지앤히오		
13	채*소	지앤히오		
14	최*중	광주광역시승마협회		
15	최*호	삼성전자승마단		
16	한*지	-		
17	황*식	세마대승마클럽		

□ 자격 승급 (가나다 순)

번호	성 명	소속	심판 등급	비고
1	진*진	충청북도승마협회	3 star	
2	정*아	제주한라대학교		
3	신*진	GEF승마단		
4	정*지	지앤히오 (강원도승마협회)		
5	전*식	대한승마협회		

□ **심의결과: 마장마술 1 star 자격 부여 및 3 star 자격 승급안 원안 승인**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7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7 마장마술 심사지 개정안

□ 의결주문

○ 마장마술 마장마술 심사지 개정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 사유

○ 2025년도 제4차 심판위원회(2025. 12. 10.)에서 '마장마술 심사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

○ FEI 마장마술 심사지 일부 개정에 따른 해당 문구 수정

○ 현재 마장마술 F Class 심사지 수준(마장마술-2)을 조정하여 다른 Class와 수준과 난이도를 맞추기 위함

□ 주요 내용

○ FEI 마장마술 심사지 일부 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 마장마술 심사지(S-1~S-4 Class) 종합 관찰(Collective mark) 문구 수정

○ 공인승마대회 규정 제15조(개최종목 및 수준) 내 마장마술 F Class의 심사지를 해당 내용으로 변경하고 차기 년도 대회 개최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구분(Class)	현 행	개 정
F Class	마장마술-2	마장마술 F1
	USEF Training Level Test 2	마장마술 F2

□ **심의결과: 마장마술 심사지 개정안 원안 승인**

□ **별첨[7-1]: 마장마술 심사지 각 1부**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회의
	제10차 이사회-심의-제1호	2025. 12. 26.	2025년도 제10차 이사회

8 말복지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사업 운영 계획(안)

□ 의결주문

○ 말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사업 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제안사유

○ 최근 국내외의 산업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강화·개정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말의 훈련, 운송,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확대

○ 협회 내 「말복지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 기준, 교육, 인증, 연구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정책 부문

① 규제 합리화 및 개선 의견 발굴

- 말 관리·운송·훈련 과정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보완 의견 제시
- 현안: 활어 운송과 같이 베에서 전기 사용 규제 완화 필요

* 관할 부서(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② 말복지 관련 국내 규정·지침 마련

- FEI EEWBC(Equine & Ethics & Wellbeing Commission) 방향 반영

* 참고: A Good Life for Horse (2023 EEWBC 보고서)

* 참고: Equine Welfare Strategy / Action Plan (2024 EEWBC 전략)

-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의 가이드라인 보완 (스트레스 관리, 운송,경기,훈련 등 전 과정 점검 포함)

③ 대회 개최 시 말복지 지침 신설

- 대회 전·중·후 말 보호 세칙 마련
- 운송·관리 표준 지침 및 제재 규정 마련
- 공인승마경기장 인증 시 복지 말 시설·환경 기준 수립

나. 시스템 구축 부문

① 대회용 말 통합 관리 시스템

- 예방접종, 방역, 은퇴, 용도 전환에 대회용 말로 전환에 따른 대회 참가 이력, 참가 성적, 대회 이동 경로 등 데이터 통합
- 부처간 협업(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등) 필요

② 등급 구조 시스템 구축

- 권역별(시도별) 등급 구조 말수송차, 보호소 등 구축
- 말복지 인증 미흡 승마장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
- 지자체 매칭, 말복지 기금 확보, 후원 기업 참여 필요

③ 폐사 말 대한 확인 절차 및 사후처리 시스템 구축

- 말 용도변경 및 폐사 처리 절차 준수 확인
- 권역별 말화장장 증설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조 필수

④ 말복지 신고·제보 시스템

-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신고·제보 시스템 운영

* 전문 검증단(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 필요)

다. 캠페인 및 홍보 부문

① 말복지 기본권 선언 선포 캠패인

- 협회(17개 시도 포함), 선수, 승마장, 생산농가, 유관단체 등 일괄 참여

② 대국민 홍보 프로그램

- 말복지 릴스·사례공모전 실시
- 승마장, 생산농가에 메뉴얼 및 홍보 포스터 보급
- 협회 메인 대회를 지정하여 「한국말복지 주간」 운영
- 홍보대사(가칭: 명예 말 보안관)제도 도입. 인플루언서, 시민, 언론 참여
- 부정 이슈 대응 가이드 마련(언론 대응 포함)

라. 대회 운영 부문

① 말의 복지와 선수의 안전 우선 대회 운영

- 경기 전·중·후 말 점검 의무화

  * 말 보안관 인력을 활용한 대회 점검

- 공인승마경기장 인증 시 말복지를 위한 시설·환경 기준 마련

  * 협회 대회 개최 경기장 우선 실시

② 퇴역경주마 승용마 전환 프로그램 운영

- FEI 퇴역 경주마 전환프로그램 RTR(Retraining Techniques for ex-Racehorses) 반영
- 마주 및 승마장, 선수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통하여 퇴역경주마 훈련 방법 교육
- 지속적인 교육과 보완을 통하여 국내 실정을 반영한 Korea-RTR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교육을 마친 말을 대상으로 협회 대회에 퇴역경주마 경기를 운영하고, 퇴역경주마 랭킹제를 도입하여 연말 시상 실시

마. 교육 및 인증 부문

① 말복지 전문교육과정 신설

- 선수, 지도자, 승마장 운영자 별 맞춤형 교육 체계 마련
- 선수 등록 시 의무 교육 실시(온라인 과정 병행)

② 말복지 인증제 실시

- 점검을 통한 말복지 인증 승마장·경기시설·대회 등급 분류

  * 기본 기준: 모든 승마장·경기시설·대회 필수

  * 권장 기준: 중규모 이상

  * 우수 기준: 인증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 등급에 따라 승마장·경기시설·대회에 인센티브 제공 또는 페널티 부여
- 최하위 등급 승마장·경기시설·대회에 대한 집중 관리 감독 실시

  * 영세시설 컨설팅 및 지원프로그램 포함(유예기간 적용)

바. 말복지 기금 조성 및 재원 확보

- 말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후원 기업 참여 시 「Friends of Horses / Happy Equine Heroes / Stable Supporters」 인증
- 기금 용도: 정책 제안, 시스템 구축, 캠페인·홍보, 구조·보호, 교육·인증 등

사. 위원회에서 상기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중요도 및 협조 기관과의 시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6년 최종 사업 운영 계획안 수립 예정

※ 연간 추진 일정(안) (●: 운영 / ○: 연간 진행 / ★: 완료)

구 분	2026년											
	상반기						하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말복지 기본권 선언식	★											
규제개선 의견 발굴		●	●	●	○	○	○	○	○	○	○	○
규정 지침 마련	●	●	★	○	○	○	○	○	○	○	○	○
대회 말복지 지침	●	●	★									
통합 관리 시스템					●	●	●	●	●	●	●	●
응급 구조 시스템					●	●	●	●	●	●	●	●
사후 처리 시스템					●	●	●	●	●	●	●	●
신고 시스템		●	●	●	○	○	○	○	○	○	○	○
릴스·사례공모전										●	○	★
홍보대사 임명				●	★							
대회 점검			○	○	○	○	○	○	○	○	○	
공인경기장 인증			○	○	○	○	○	○	○	○	○	
퇴역경주마 교육		○	●		○	●		○	●			
퇴역경주마 대회/랭킹			○	○	○	○	○	○	○	○	○	
퇴역경주마 랭킹시상												★
말복지 전문교육과정		●	●	●	●	●	●	●	●			
선수등록 의무교육			○	○	○	○	○	○	○	○	○	
인증 등급 분류					●	●	●					
인증 점검								●	●	●	●	
인증제 시상												★
말복지 결과 보고회 및 자선행사												★

※ 최종 추진 사업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의결과 : 말복지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사업 운영 계획(안) 원안 승인